
강릉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2021. 8.



강릉시의회

제 출 문

강릉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강릉시의회 입법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자 최 인 혜



강릉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참여의원



의장 강희문



부의장 신재걸



대표의원 정광민



참여의원 이재안



참여의원 최익순



참여의원 조대영



참여의원 허병관



참여의원 김복자



참여의원 김미랑



참여의원 김진용



참여의원 윤희주

목 차

I 연구 개요	p1
II 연구 추진 방향	p3
III 인력투입 및 과업분담 내용	p4
I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p5
V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p11
VI 강릉시 위탁 관계조례 문제점(총괄)	p24
VII 강릉시 위탁 관계조례 유형별 문제점	p27
VIII 강릉시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현황	p35
IX 강릉시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검토	p43
X 강릉시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p257

□ 과업명 : 강릉시의회 입법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1. 연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으로 정한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위탁 관련 조례의 발굴
- 법령에서 강릉시장에게 위탁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법령과 충돌하는 강릉시의 위탁 관계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합리적인 보완 방향 제시
- 강릉시 사무 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 제도의 법리 및 절차·방법 등을 먼저 이해하고 위탁 행정 실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공서비스의 질(Quality)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면서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의 완성을 기하고자 함
-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기능 강화 및 연구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2.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부패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이를 조속히 개정 및 보완함

-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 법률에서 강릉시장이 위임·위탁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으로 행정 권한자의 주체를 바꾸려 하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 필요(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 현재 강릉시에서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 중인 관계조례와, 공공부문(출자·출연기관 등)의 위탁 관계조례를 추출하여 상위 법률상 위탁의 법적근거, 법정 수탁대상기관의 적정성, 그밖에 절차적 사항 등에 있어서 법령 적합성 여부를 중점 검토

→ 조례상 위탁의 법적근거 유무, 법정 수탁대상기관의 법적지위 가능 여부(법령상 자격 부여 등), 그밖에 위탁 관계조례의 절차적 사항들이 법령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 관계 법령상 기본조례(일반조례) 및 개별조례에 규정 사항의 위임 근거 여부 검토

→ 관계 법령과 조례,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간 불부합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비 방안 제시

II

연구 추진 방향

1. 연구 수행에 따른 법적 논거

- 관계법령상 명문의 규정
- 사법부(법원) 판례
- 법제처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 그 밖에 정부 소관부처 예규(지침) 등

2. 연구 수행방법

- 현행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 현행 위탁 관계조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검토
-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계조례 비교·검토
- 정비 대상 조례 발굴 후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 제시

3. 기타

- 조례상 위탁의 법적근거 유무 검토
- 조례상 법령 위임 적합성 여부 검토
- 위탁사무별 관계조례 설치 여부 검토
- 조례상 입법미비로 법적 안정성 저하 사항 검토

Ⅲ

인력 투입 및 과업 분담 내용

▣ 연구 인력 및 약력

연구자	책임 구분	현직 및 주요 경력
최인혜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 고려대 국제관계학 박사
배석주	[공동연구원] 정비 대상 조례 발굴·검토 및 정보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외대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외대 외래교수 · (전) 조순형 국회의원 보좌관

▣ 과업 분담 내역

직책	성명	업무 분장 내역
연구책임자	최인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프로젝트 진행 총괄
공동연구원	배석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 대상 조례 발굴 및 검토 · 판례 및 기관 의견 등 취합 · 문헌 정보 조사 등

I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1.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조례·규칙에 관한 입법 기능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조례·규칙에 관한 입법 근거, 입법 한계,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헌법」

제117조 ①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갖는 의미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고유사무’라고도 함)를 처리할 수 있는 외에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위임사무도 함께 수행
-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는 자치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성도 있기에 사무의 배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법」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규정
- 주 내용으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노력 의무, 조직과 운영, 규모의 합리화·적정성 의무, 법령 또는 상급 자치단체 조례 위반 금지 의무 등

- 법령 준수 의무는 자치사무가 법령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특히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준수 의무의 경우, 상급 자치단체는 하급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하 자치단체 사이에 늘 그러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러한 지도·감독의 의무는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원칙임

다. 자치사무 확보에 관한 의미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함

- 위임사무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가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나뉜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상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임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등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자주적 책임 하에 처리되며 취급과 집행에 있어서 고유사무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분류】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고유사무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위임
근거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법령으로 정한 사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경비 부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보조할 수 있다고 표현되는 사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	전액 국비 보조로써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동책임	국가 책임
법령 규정 형식	법령상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치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된 사무	법령상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사무로서, 법령에 “국가 또는 광역단체가 지자체에 위임한다.” 라는 규정 “~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한다.” 는 규정 외에 법령에 “시·도 또는 시·군·구는 ~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	법령에 “○○장관은 ○○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외에 “~을 하려는 자는 ○○○장관의 ○○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 중,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된 사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
국가의 감독	소극적 감독	소극적 감독 (제한적) 적극 감독	소극적 감독 적극적 감독
지방의회 의 관여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사무 수행에 따른 필요 경비 부담에 외에는 사무 처리에 관여할 수 없음

V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행정권한 법정주의(行政權限 法定主義)】

“행정기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그 권한을 변경하는 위임·위탁 시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법령에 따라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10.31. 결정 2001헌라1),

→ 행정기관이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가능하다(법제처-의견제시 사례).

1.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의 개념

□ 사회복지 등 대주민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주민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총액임금제 등의 한계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공무원 조직과 정원, 예산 문제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능률성 등을 최대화 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행정사무의 위탁이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이란,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

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전단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후단의 (개별)법령으로 정한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법인·단체, 기관, 개인 등 민간부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대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따라서 (단체)위임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다.

-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에 관한 고유사무 중에서 그 일부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의 범위

-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별 예시】

- 조사업무 : 자연환경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조사 등
 - 검사·검정업무 : 특정물질 처리확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체검사
 - 관리업무 : 도시공원시설 관리, 도서관·박물관·환경기초시설 등
 1.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 집행 기능
주차장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2.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 기능
건설 안전시험, 교량 안전점검, 설계 감리 등
 4. 단순 집행적인 시설·장비 관리 기능
조경관리, 통신 장비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5. 서비스 제공 기능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장묘(납골당, 공원묘지)관리, 시험관리 등
 6. 민간이 운영 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 (200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무 편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는 분류상 규제사무 이외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단순사무’ 또는 ‘특허공법 및 신기술’ 및 ‘보건의료 인력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등이 위탁의 대상이다.

【법령상 비권력적 사무와 규제사무의 정의】

-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가 대상임
-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 등을 요하는 사무나 인·허가 및 단속 업무 등 권력적 행정 및 규제사무 등은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함

가. 법령상 민간위탁의 정의(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위탁

나. 법령상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허가·인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공장허가, 요식업 허가 등)
 - 그밖에 지방세 징수, 법정 부담금, 주·정차 단속 등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행위 등

2. 공공위탁

가. 공공위탁의 개념

- 공공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공공단체·공공기관)에 사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제151조)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공위탁의 범위

-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정의가 법률에서 명문화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공공단체의 해석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공공단체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위탁의 대상기관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제104조 제2항),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제151조), 그 밖에 공공기관 등으로서 법적지위가 공공부문이므로 ‘공공위탁’이라 한다.
-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일부 출자·출연 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공공부문의 위탁을 공공위탁으로 지칭하고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2015)
- 한편 대법원은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예산 지원 및 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법인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지원하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체육회, 문화원 등 공법인이 해당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권한과 책무가 따른다.
- 공공위탁의 수탁대상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선정·공모에 참여하여 법령·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에서 최종 선정된 후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된다.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정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공공단체」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2009-0362, 10-0019). 또한, ‘그 기관’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하부·소속기관 등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15-11-10).

3. 관리위탁

가. 관리위탁의 개념

-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제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조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제3자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 법상 유사 개념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있는데 이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정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흔히 임대라고도 한다. 주로 식당, 카페, 매점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 대상이며, 사용자는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산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사용·수익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 제22조의 사용료 부과 및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 수립 시 관리방법, 수입·지출비용 등을 산출하여 그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을 계약 전에 미리 정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상계의 개념이다.

“공유재산” 이란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 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나. 관리위탁의 범위

-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행정재산이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수탁기관이 하는 행위의 법적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
-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용도로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_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내지 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다. 행정사무 위탁의 특례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며, 법상 수탁대상기관은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참여가 가능
- 행정사무 위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행정안전부_고시)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우선적으로 적용

【관리위탁 대상시설 유형별 예시】

1. 비교적 단순 서비스 관리 시설
환승주차장 및 견인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관광지 및 유적지 관리, 장묘시설(납골당, 공원묘지) 관리 등
2.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하수처리장, 재활용시설,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 등

종합운동장, 수영장, 족구장, 테니스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등

4. 시민 복지서비스 지원·관리가 효율적인 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5.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 등 도시철도시설, 산업단지 시설 등

VI

강릉시 위탁 관계조례 문제점(총괄)

구 분	문 제 점	개선방안
<p>1.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공공기관) · (공공단체)</p>	<p>□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p> <p>□ 강릉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해 민간위탁의 절차·방법,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절차적 기본조례는 미제정</p> <p>□ 현행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민간부문에만 위탁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공공부문 수탁대상기관의 참여를 제한</p> <p>□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의 입법미비로 의회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 발생 우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의결권·동의권) 침해</p>	<p>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 명문화</p> <p>↓</p> <p>민간위탁 조례에 공공위탁을 통합하는 기본조례로 운용</p>
<p>2.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화</p>	<p>□ 사무의 위탁 시 행정재산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의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p> <p>□ 행정재산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방법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 등 법령과 불부합</p> <p>□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므로, 단순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적용 불가</p>	<p>관리위탁 대상사무의 절차적 기본조례 제정·검토</p>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법제처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 2017-0103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 여부

2.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제2호에서는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탁(제2항)과 민간위탁(제3항)을 구별해 각각의 위탁대상 사무범위와 수탁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5. 6. 9. 의견제시 15-0110 참조), 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대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로 하되, 수임 또는 수탁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3항의 경우에는 위탁대상 사무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되, 수탁자의 범위를 제2항보다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같은 조례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있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의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서울시장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그 사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별도의 위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VII

강릉시 위탁 관계조례 유형별 문제점

【사례 1】 조례상 위탁 계약기간이 법령과 불부합

◎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 등 일부 조례에서 위탁 계약기간이 법령 불부합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

제7조(위탁관리) ① 농공단지내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협의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사례 2】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 규정화

◎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 조례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불부합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 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시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 시설
2. 강릉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 및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사례 3】 조례상 위원회 구성이 법령과 불부합

●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조례에서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법령과 불부합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

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강릉시 위탁사무 제도 운영상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제도의 개념 정의 및 이해 부족

→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의 혼용으로 절차상 하자가 우려되므로 법정 위탁의 개념 구분 필요

◎ 위탁 구분과 관련해 체계적 연구 및 매뉴얼 미흡으로 법령과 불부합

→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사 사무의 혼용으로 개념 구분이 필요

◎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을 간과한 임의 위탁 남발

→ 행정사무 위탁의 근거가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탁하는 등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 교육 필요

◎ 사무의 위탁 시 민간위탁 조례만 적용해 절차적 민주성 결여

→ 위탁사무가 법적근거를 달리함에도 민간위탁만 적용하여 법령과 불부합

【지방자치단체 위탁의 법적근거 예시】

법령구분	법정 수탁대상기관	법조문	조례
「지방자치법」	·공공위탁 → 공공단체·공공기관	제104조제2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151조	
	·민간위탁 → 법인·단체 그 기관, 개인	제104조제3항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법」	·관리위탁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제27조제1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탁관리 → 특별법상 법인	제4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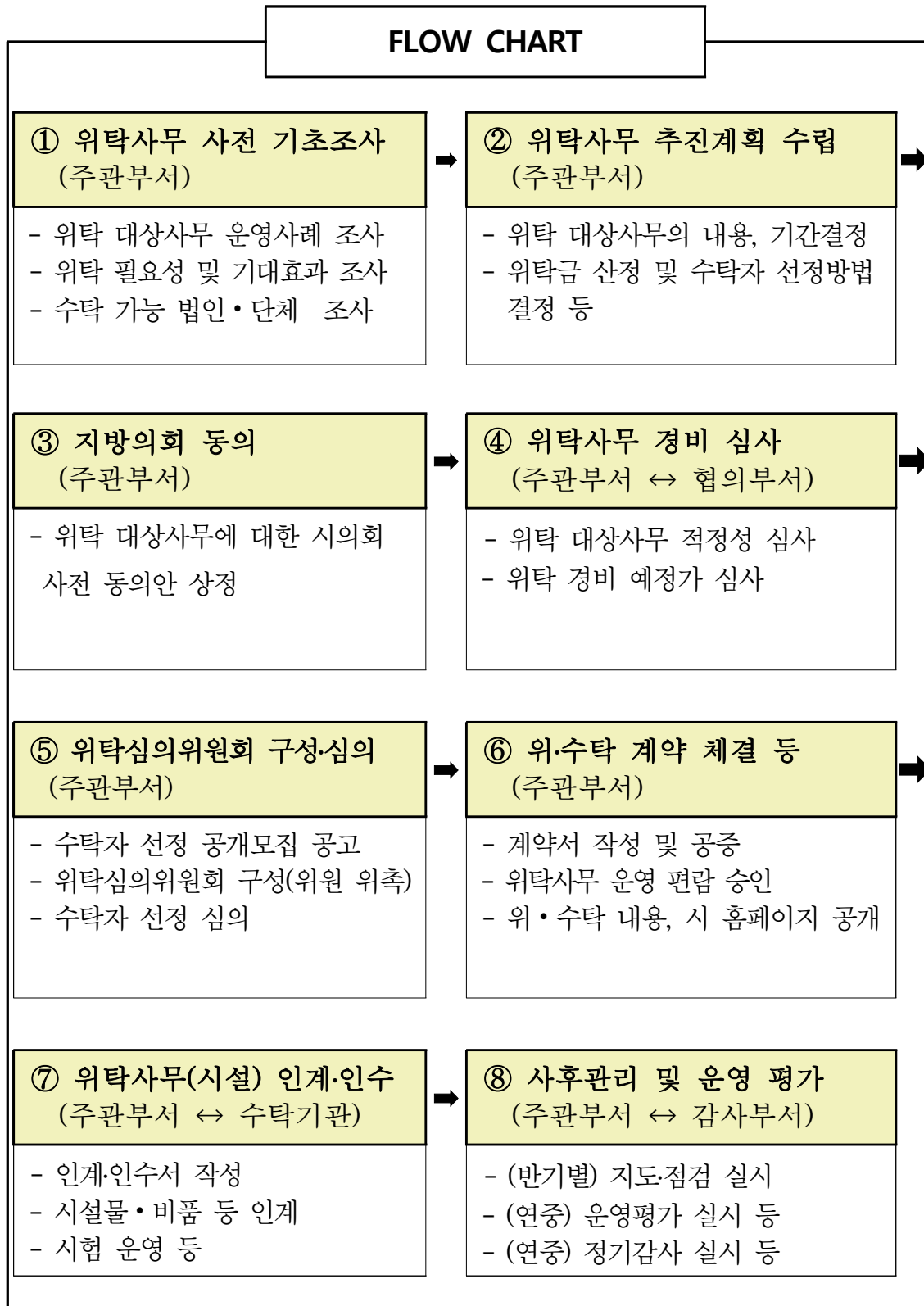
□ 강릉시 위탁사무의 제도개선 사항 요약

구분	현행	개선안
위탁 대상사무의 성질 구분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리위탁·위탁관리 혼용	법정 위탁 개념 구분 필요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사 사무 혼용	유사 개념과의 구분 필요
위탁 시 적정성 판단 기준	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 등 구체적 판단 기준 모호	명확한 적정성 판단 기준 제시
위탁사무의 법적근거 제시	사무 위탁 시 준용 근거 미흡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적 사항 미리 제시
자치사무 위탁 동의	사무 위탁 시 자치사무만 의회 동의를 받고 단체위 임사무는 모두 배제	위탁의 법률상 효력은 고 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모 두 동일하므로 준용
심의 위원회 적용 근거	사무 위탁 시 「민간위탁 조례」의 심의위원회가 수 탁기관을 선정해 법정위 원회가 모두 배제	법정위원회 및 임의위원 회의 개념과 상관관계 제 시로 합법성 도모
재계약(수의계약) 시 위원회 사전 평가·심의	재계약 (수의계약)에 따른 심의위원회 평가 시 구체 적인 법적 기준이 모호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 약 평가에 따른 자격(법 적 지위) 명확화
민간위탁 조례만 적용하여 공공 부문은 모두 배제	사무 위탁 시 민간의 법 인·단체, 개인에게만 적 용하므로 공공부문이 모 두 배제되므로 법령 위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하는 사무 위탁의 기 본조례를 제정하여 법령 적합성 유지
행정재산의 위탁 조례 미제정·미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관 리·운영에 따른 위탁 조 례와 매뉴얼 미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위탁에 따른 제도 정비로 위탁사무의 합법성 유지

□ 사무의 위탁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유사 개념	내 용	근거법령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공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공공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1조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대행	1.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단체장이 대신 권한 행사	「지방자치법」 제111조
	2. 업무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용역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특정재화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사업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법」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교부	「지방재정법」 제2장의2

□ 사무의 위탁 절차도



VIII

강릉시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현황

■ 위탁 관계조례 현황

(2021년 4월 현재)

위탁 기본 조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개
위탁 개별조례	101개
(합 계)	103개

■ 권한 사무별 현황

자치사무	10개
위임사무	91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법상 강릉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를 규정한 기본조례 성격이므로 현황의 목록에서는 제외함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위탁 근거	사무 구분	수탁 대상기관
1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2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출자출연법	×	위임	
3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법	×	위임	
4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	위임	
5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위탁 근거	사무 구분	수탁 대상기관
6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위임	공공·민간
7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자원봉사기본법	○	위임	공공·민간
8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9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법	×	위임	
10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재난안전법	×	위임	
11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	위임	공공·민간
12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지방세기본법	○	위임	공공
13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북한이탈주민법	○	위임	민간
1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법	○	자치 위임	공공·민간
15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자정부법	×	위임	
16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지능정보화 기본법	×	위임	
17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법	×	위임	
18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역사랑 상품권법	○	위임	공공·민간
19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근로복지기본법	○	위임	공공·민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위탁 근거	사무 구분	수탁 대상기관
20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노사관계발전법	×	위임	
21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법	×	위임	
22	강릉시 소비자보호 조례	소비자기본법	×	위임	
23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통시장법	○	위임	민간
24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	위임	
25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정책기본법	○	위임	공공·민간
26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지방출자출연법	×	위임	
27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지방공기업법	×	위임	
28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	위임	공공·민간
29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물환경보전법	○	위임	공공·민간
30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31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하수도법	×	위임	
32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자연공원법	×	위임	
33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법	○	위임	민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위탁 근거	사무 구분	수탁 대상기관
34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야생생물법	×	위임	
35	강릉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자연환경보전법	×	위임	
36	강릉시 지하수 조례	지하수법	×	위임	
37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발전법	○	위임	민관협력 단체
38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	위임	민간
39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산림보호법 산림교육법	×	위임	
4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산림휴양법	○	위임	공공·민간
41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	위임	공공·민간
42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출자출연법	×	위임	
43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국어기본법	×	위임	
4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	위임	공공·민간
45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	위임	
46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	위임	공공·민간
47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	위임	공공·민간
48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림휴양법	×	위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위탁 근거	사무 구분	수탁 대상기관
49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관광진흥법	○	위임	공공·민간
50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법	×	위임	
51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52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5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문화재보호법	○	위임	공공·민간
54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55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해수욕장법	○	위임	공공·민간
56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관광진흥법	○	위임	공공·민간
57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지방출자출연법	×	위임	
58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59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북한이탈주민법	×	위임	
60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법	×	위임	
61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	위임	공공·민간
62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위임	공공·민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위탁 근거	사무 구분	수탁 대상기관
63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	위임	공공·민간
64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숙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위임	공공·민간
65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	위임	민간
66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위임	공공·민간
67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68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사법	○	위임	공공·민간
69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사법	○	위임	공공·민간
70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	위임	
71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	위임	공공·민간
72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청소년활동법	○	위임	공공·민간
73	강릉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청소년기본법	○	위임	민간
74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	위임	
75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영유아보육법	○	위임	공공·민간
76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건축법	×	위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위탁 근거	사무 구분	수탁 대상기관
77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법	×	위임	
78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	자치	공공·민간
79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	위임	공공·민간
80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법	×	위임	
81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보행안전법	×	위임	
82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법	○	위임	공공·민간
83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법	○	위임	공공·민간
84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법	×	위임	
85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 조례	농외소득법 농업식품기본법	×	위임	
86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농어업인 삶의질법	×	위임	
87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식생활교육법	×	위임	
88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어린이식생활법	×	위임	
89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법	×	위임	
90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	위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위탁 근거	사무 구분	수탁 대상기관
91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신건강복지법	○	위임	공공·민간
92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수도법	○	위임	공공·민간
93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수도법	×	위임	
94	강릉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수도법	×	위임	
95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하수도법	×	위임	
96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평생교육법 지역문화진흥법	×	위임	
97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평생교육법 지역문화진흥법	×	위임	
98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	위임	공공·민간
99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위임	공공·민간
100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	위임	공공·민간
101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법	○	위임	민간
102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박물관미술관법 문화예술진흥법	○	위임	공공·민간
103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	위임	공공·민간

IX

강릉시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검토

1.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 추진, 자매결연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형식에 따른 체결을 말한다.

제6조(의회 동의)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다. 검토의견: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	공공·민간

2.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강릉시(이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3.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시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학교급식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4.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릉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

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장애인공무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음에도 조례에서는 달리 정하고 있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공무원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5.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릉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민원상담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위탁운영) 강릉시장(이하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과 불부합
- 민원콜센터가 ‘행정재산’ 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이하 같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자치 사무	○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6.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강릉시장(이하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강릉시(이하 “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위탁기간만료 등 처음 동의받은 내용의 변경 포함)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위탁 기본조례에서 수탁대상 기관을 민간부문만 적용하고 있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위임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공·민간

7.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근거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과 불부합
-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자원봉사 기본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공공·민간

8.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과 불부합
-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9.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파견 근무)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강릉시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나.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대표

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공무원법 재외공관설치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0.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 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재난안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11.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서 절차·방법 등이 부재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자연재해 대책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12.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릉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강릉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p>

나.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p>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세기본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공공

13.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7조의 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등에게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영 제47조의6의 보호대상자

제5조(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

제6조(의무)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북한이탈주민법」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검토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북한이탈주민법	위임 사무	○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민간

1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 위탁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행정재산 기간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나. 근거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

탁”)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공유재산법령」 제27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적인 사무 위탁의 특례 규정이므로 우선 적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공유재산법	자치위임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공·민간

15.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강릉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국내·외에 시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 총괄부서와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와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 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 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용성 증진

제7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전자정부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16.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사업
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3. 정보화마을 행사참여 지원
4.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나.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에서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불부합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20년 6월 29일 전부개정돼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17.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8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소상공인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18.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있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역사랑상품권법	위임 사무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19.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 관리)	① 복지관 설치 목적이 동일한 시 관내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법인인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근로복지 기본법」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복지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근로복지기본법	위임 사무	○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20.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시 소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를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노사관계발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21.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등,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 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

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강릉시 소비자보호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에 있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9조(소비자 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기본법」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 2.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 3.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인·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을 활용하는 방법
-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소비자기본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소비자보호 조례	

23.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나. 근거 법령 : 「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전통시장의 시설물관리 업무는 위탁이 아닌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민간

24.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5.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 수행) 시장은 제12조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청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강릉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근로복지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25.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릉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고용정책기본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26.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5.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 과학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 할 수 있다

나.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27.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 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공유수면 매립 등 공영개발사업
5.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경제환경국장으로 보한다.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이하 “지방직영기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공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설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수탁대상기관
지방공기업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28.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 내의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울타리시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2. “공동이용 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 복지후생시설을 말한다.
3.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내 공동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유지·보수와 개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 농공단지내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협의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근거 법령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

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서 수탁대상기관을 지정 위탁하는 등 법령과 불부합
-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위임 사무	○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	공공·민간

29.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비용 부담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비용 부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강릉시가 설치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기업 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려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
5. 삭제 <2019. 10. 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 등이 법령 불부합
- 처리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물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공공·민간

30.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이하 “시설”)이란 통합컨벤션센터, 체험연수센터,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녹색도시체험센터 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란 녹색도시 체험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 및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①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위탁관리와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카.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과 불부합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자치 사무	○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31.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의2(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⑧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하수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32.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경포도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시설 사용료”라 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16조(입장료의 징수 위임) ① 시장은 각종 요금의 징수사항을 당해 관광사업추진단장이나 비영리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위탁관리) 공원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제19조(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①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0조(권한의 위탁)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자연공원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33.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17조(민간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공중화장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공중화장실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민간

34.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1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①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강릉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하 “포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포함)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 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 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야생생물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35. 「강릉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 포함)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제18조(위탁 처리)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자연환경보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36. 「강릉시 지하수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지하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강릉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16조(지하수 이용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지 2)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지하수법」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하수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지하수 조례	

37.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함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강릉시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강릉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속가능발전법	위임 사무	○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민관협력단체

38. 「강릉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업무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폐기물처리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폐기물관리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민간

39.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산림의 중요성과 동해안 산불의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식 고취 및 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숲사랑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관”이란 산림생태관, 산불교육관, 산림복구관, 영상관 등을 말한다.

제14조(임대·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임대·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한다.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산림보호법 산림교육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4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위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은 강릉시 강동면 울곡로 1715-85에 둔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①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나. 근거 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자연휴양림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산림휴양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공공·민간

41.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함은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강릉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본관시설: 홍보전시관, 교육실, 연습실, 업무시설 및 그 부속 시설물

나. 부대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야외광장 및 그 부속시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단오제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이하 “수탁자“)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무형문화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전승 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 상세분류는 「별표 1」 과 같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 제2항 관련)

5. 문화 보급·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전수교육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42.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릉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4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 시장 또는 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법」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43.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등에 따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5년마다 시민의 국어와 지역어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하고, 제8조·제9조 및 제11조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중 국어사용에 관해서는 법 제9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전문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시민, 기관·단체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촉진 및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국어사용상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해당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존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국어기본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4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 문화공간이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를 향상시키고자 강릉시가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작은 공연장 단(복합문화공간)
2. 명주사랑채(만남의 공간)
3.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
4. 임당생활문화센터

제13조(입장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권의 발매 및 관리는 시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시장은 문화공간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문화공간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45.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라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일 수탁기관과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6호, 2018. 3. 9.]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역문화진흥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6.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강릉시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문화의 거리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 강릉시민(이하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 공표한다.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운영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행사와 축제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공공 · 민간

47.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 자료 및 향토 문물을 수집·진열하여 주민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조사연구와 교육계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릉시 민속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릉시 민속관은 강릉시 운정동 463-3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및 진열
3. 민속 및 향토문물 자료의 정리 및 조사·연구
4. 기타 민속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제2조제1항 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 상세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5. 문화보급·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민속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사무	○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48.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조성·원칙 및 범위) ① 시장은 시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강릉시 걷는 길을 조성한다.

③ 걷는 길의 조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그 밖에 국가, 강원도 또는 시가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근거 법령 : 「산림휴양법」, 「보행안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

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 체험·학습 또는 관찰활동(이하 “탐방”)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생태·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숲길의 운영·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중

- 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
2. 숲길을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해 숲길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활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산림휴양법 보행안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9.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입장료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 ①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69조(관광지 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 2의2. 삭제 <2018. 3. 13.>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제48조의6제1항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관광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관광진흥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공공·민간

50.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 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유치·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 활동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수급(需給)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

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51.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

제2조(위치) 강릉시 모래시계공원(이하 “공원”)은 강릉시 현화로 990에 둔다.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강릉시장은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공원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자치 사무	○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	공공·민간

52.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2조(위치)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이하 “캠핑장”)은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캠핑장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자치 사무	○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공공· 민간

5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이하 “바다부채길”) 탐방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바다부채길은 강릉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바다부채길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재보호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정동심곡바다 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공공·민간

54.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강릉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도비 지원 사업일 경우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시장이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55.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 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해수욕장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해수욕장법	위임 사무	○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56.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시설“이란 통일전시관, 퇴역 전함, 퇴역 항공기, 북한잠수함, 관리 사무소, 주차장 등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2조(임대·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법인에 임대·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69조(관광지 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관광진흥법	위임 사무	○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57.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릉시장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이하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릉시민축구단 운영
2.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 정착을 통한 지역홍보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
4.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검토 의견

- 법상 재단의 사업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도 중복 규정하여 법령 불부합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위임 사무	X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58.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연안 오염 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공동작업장”(이하 “작업장”)이란 수산물의 할복·세척에 필요한 시설물(작업장 시설, 사무실, 기계실, 폐수처리 시설, 관정, 취수·폐수 관로 등) 일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 관리) ① 작업장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사 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거나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폐수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 불부합
- 수산물공동작업장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자치 사무	○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공공·민간

59.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3. 자녀 보육·교육사업
4.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5. 문화·체육행사 지원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가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대상·방법·절차 등 및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주거지원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북한이탈주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60.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실태조사)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처우개선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61.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공공·민간

62.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방법)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운영 주체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장애인복지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63.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복지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공공·민간

64.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릉시립복지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숙인의 생계·주거·의료·재활서비스 지원
2.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노숙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복지원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노숙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65.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강릉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자금 대여)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용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나.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자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

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의 적립 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위임 사무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공·민간

66.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치 및 명칭) 강릉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을 본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분관으로 한다.

1.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 강릉시 경강로 1956(홍제동)
2. 북부노인종합복지관 :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230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 성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복지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67.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항의 위탁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

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회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자치 사무	○	강릉시 읍·면종합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68.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묘
2. 봉안시설
3. 자연장지

제18조(운영 위탁) ① 공설장사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공설장사시설 인근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 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 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 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공설장사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장사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69.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 운영) ① 화장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시설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입지 선정 공모에 따라 부대시설의 일부를 유치 지역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공설장사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장사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70.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강릉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②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교육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음
-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함에도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71.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외국인처우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공공·민간

72.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수련관
- 나. 청소년수련원
- 다. 청소년문화의집
- 라. 청소년야영장
- 마. 유스호스텔

제5조(시설의 운영) ① 강릉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강릉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근거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수련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청소년활동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민간 (청소년단체)

73. 「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청소년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청소년기본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민간 (청소년단체)

74.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
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
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아동복지시설 위탁 근거는 있으나 일반적인 아동복지 증진 사업 위탁의 근거는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75.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8조(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

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의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센터와 어린이집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영유아보육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공공·민간

76.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건축법」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조례 제정 당시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등 확인결과 상위 법
적근거가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로 확인
되며,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인 권한의 위탁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건축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77.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 구성·운영) ①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자생적 경제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업무 등을 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 군의 군수는 제외)를 말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 등”)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관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밖에 전담조직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 등”)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② 구청장 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도시재생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8.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마을만들기”)이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활동가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3. 각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p>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다. 검토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공공·민간

79.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사무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공공·민간

80.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

1. 강릉시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관리 및 운영
4.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p>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교통약자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81.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p>「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제9조(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보행 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p>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p>

나. 근거 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p>「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보행안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82.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관리수탁자 “)의 자격과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 조직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 ③ 계약사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 ⑤ 시장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주차장법」, 「전통시장법」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

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했거나 관리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 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주차장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주차장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공·민간

83.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9조(지정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정게시시설 내 게시 대상 현수막의 선정 등) ① 제19조에 따라 지정게시시설의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4호 내지 제8호에 따라 현수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옥외광고물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84.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p>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 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p>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p>

나. 근거 법령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p>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 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p>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도로명주소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85.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강릉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농외소득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농외소득법 농업식품기본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조례	

86.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의 설치)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과 추진단의 운영)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2조에 따른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⑤ 시장은 신활력사업 실행주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농어업인삶의질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7.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을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업무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업무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나. 근거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식생활교육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88.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설치 및 업무 등) ① 시장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다. 또는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근거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 단체급식 제공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의 사항이 입법기술상 부적정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어린이식생활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89. 「강릉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조례 규정

<p>「강릉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

나.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p>「식품위생법」</p> <p>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한다.</p> <p>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p> <p>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식품위생법 시행령」</p> <p>제62조(기금의 운용)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식품위생법	위임 사무	○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공·민간

90.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4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금연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건교육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91.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운영) 강릉시장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릉시 정신재활시설(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하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

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이 가능하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정신건강복지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92.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강릉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나. 근거 법령 : 「수도법」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점검·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

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이 가능하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수도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수도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공공·민간

93.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강릉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나. 근거 법령 : 「수도법」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수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94. 「강릉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17조(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경비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나. 근거 법령 : 「수도법」

「수도법」

제47조(마을상수도) ② 시장·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제55조(소규모 급수시설) ⑥ 시장·군수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②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공학·의학·농학·의학 또는 약학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의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관리실태 보고)②법 제55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 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다. 검토 의견 : 법상 수도시설은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소규모급수시설은 수도시설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수도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95.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강릉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나.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음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96.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1조(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관(“학습관”)을 설치하고,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① 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지역문화진흥법」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평생교육법 지역문화진흥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97.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강의실, 대강당, 소강당, 전시장 등의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위치) 강릉시 평생학습관(“학습관”)의 위치는 강릉시 강릉대로 454(포남동)에 둔다.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강릉시장은 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 및 사업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지역문화진흥법」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조례가 법령 불부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평생교육법 지역문화진흥법	위임 사무	X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98.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집”이란 문화정보자료실,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그 밖에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집 : 지역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문화의집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법정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사무	○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공공·민간

99.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정리 및 보존하여 강릉시 (“시”)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 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장난감도서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수탁대상기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100.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작은도서관 관리 위탁 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나. 근거 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도서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사무	○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공공·민간

101.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가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2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시 위탁방법 및 위탁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체육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체육시설법	위임 사무	○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민간 (개인·단체)

102.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강릉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칭하고, 위치는 강릉시 화부산로 40번길 46에 둔다.

제27조(위탁 관리)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에 주소를 가진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미술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미술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박물관미술관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공공·민간

103.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 전시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강릉아트센터(Gangneung Arts Center)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아트센터의 명칭은 강릉아트센터(Gangneung Arts Center)라 한다. (이하 “아트센터”)

제4조(시설 구분)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야외공연장 등

2.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악기, 음향시설, 무대설비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비상근 포함) 등 시설 규모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 불부합
- 아트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준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법	위임 사무	○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X**강릉시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가.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

□ 법령으로 정한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강릉시의회의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방법, 사후관리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함

나. 근거법률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제2항·제3항, 제151조

다. 조례안 검토 및 개정시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
<p>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p> <p align="center">“신설”</p> <p align="center">“신설”</p> <p align="center">“신설”</p> <p>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p> <p>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 	<p>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p> <p>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p>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 align="center">“삭제”</p> <p align="center">“좌동”</p> <p align="center">“좌동”</p> <p align="center">“좌동”</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리사무</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④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위탁기간 만료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의 변경도 포함한다.)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 align="center">“신설”</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 align="center">“삭제” (조항 이동)</p> <p align="center">“삭제” (조항 이동)</p> <p align="center">“삭제” (조항 이동)</p> <p>제5조(위탁의 적절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실적,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③ 시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된 경우 10년간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⑤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가 위법사항으로 협약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한다.</p> <p>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사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p> <p>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 align="center">“삭제”</p> <p>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p> <p align="center">“삭제” (조항 이동)</p> <p align="center">“삭제” (조항 이동)</p> <p>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p> <p>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11.16.> 2. 삭제 <2016.11.16.> 3. 삭제 <2016.11.16.> 4. 삭제 <2016.11.16.>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탁사무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 align="center">“신설”</p> <p align="center">“신설”</p>	<p>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⑤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30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3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탁사무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④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현행	개정안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 해당 위탁사무 관계공무원</p> <p>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p> <p>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p> <p>4. 해당 위탁사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p> <p>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 (조항 이동)</p> <p>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p> <p>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p>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 align="center">“신설”</p> <p align="center">“신설”</p> <p align="center">“신설”</p>	<p>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p> <p>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당연직 위원인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현행	개정안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신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위탁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p> <p>“신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 제17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p> <p>“신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 align="center">“신설”</p> <p>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대상사무·위탁내용 3.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p>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이 비회기 때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align="center">“삭제” (조문 이동)</p> <p>제20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5.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계약 해지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8. 예산지원내용 9. 계약의 해석 등 그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 align="center">“신설”</p> <p>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p> <p align="center">“신설”</p> <p>제17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p> <p>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21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2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3.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p> <p>4.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훼손·파괴·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을 때</p> <p>5. 임직원의 배임·횡령으로 1년 이상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p> <p>② 시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에</p>	<p>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p> <p>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p> <p>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시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p> <p>제23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p> <p>1.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성실히 응해야 한다.</p> <p>2.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5. 해당 시설의 기존 종사자는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p> <p>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p> <p align="center">“신설”</p> <p>제11조(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조</p>	<p>고, 시장의 지도·감독, 그 밖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p> <p>2. 위탁시설, 장비, 경비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p> <p>3. 위탁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p> <p>4.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p> <p align="center">“삭제”</p> <p>5.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p> <p>제2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p> <p>제25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26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의 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8조(제3자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위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다. 또한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다.</p> <p>제14조(사무편람)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5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위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위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료·수수료 등을 위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align="center">“삭제” (조문 이동)</p> <p>제27조(사무편람)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28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위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위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위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 align="center">「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p>
<p>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p> <p>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해야 한다.</p> <p>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align="center">“신설”</p>	<p>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p> <p>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30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31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p>

현행	개정안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적절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미리 위임·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사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30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3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탁사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위탁사무 관계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해당 위탁사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인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위탁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실비 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이 비회기 때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시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제23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감독, 그 밖의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위탁시설, 장비, 경비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3. 위탁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5.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

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

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